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제1조 (목적)

본 실천사항은 원사업자(이하 "당사"라 함)가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기본원칙)

본 실천사항은 당사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설치·운용하는 내부심의위원회의 자율성, 적절성 및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3조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1. 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외주) 담당임원이 주관하는 회의체를 말한다.
2. 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관련업무 담당 구매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구매부서장, 공정거래 추진부서장 등 관련자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 시 품질 등 유관 부서장 참여 및 사외이사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3. 내부 심의위원은 매년 1회 조직변경 등을 반영하여 운영하고 연중 조직의 변경사유가 발생 시 하도급(외주) 담당 위원이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4. 기존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용을 위해서 설치된 심의기구 등이 1,2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내부 심의위원회로 운용할 수 있다.

제4조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의 실효성)

1. 내부 심의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수시로 진행할 수도 있다.
2. 내부 심의위원회는 당사의 거래하고 있는 중소하도급 제조위탁 업체 중 2023년 기준 14.9억 이상 거래가 발생한 기업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

※ 하도급법 관련 사전 심의사항

- ①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여부
 - ②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준수여부
 - ③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준수여부
 - ④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
 - ⑤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
 - ⑥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
 - ⑦ 부당한 특약 조건 설정 금지 위반여부
3.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
 4. 내부 심의위원회는 추가 협의 안건(내부 협의사항 및 협력사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5.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6. 필요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7.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예시. 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하여야 한다.
 8. 심의 및 협의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안건 없음"으로 회의록을 작성·보관할 수 있다.

제5조 (사후 관리)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년 0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년 0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5년 0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1. 회의록 양식 다운로드
2. 심의 항목별 운영 가이드 다운로드
3. 심의위원회 운영조직도 다운로드

내부심의위원회 회의록

하도급 거래 관련 개최한 내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하기와 같습니다.

- 하 기 -

■ 일시, 장소 : 20##. ##. ## ##:## ~, ### 회의실

■ 심의 결과

□ 하도급 거래 사전 심의

1. 가격결정(단가 변경 등)
2. 협력 업체 등록 및 취소 등
3. 하도급법 관련 사전 심의 사항
4. 추가 협의 안건 (내부 협의사항 및 협력사 요청사항 등)

□ 하도급 거래 적법성 사후 검증

1. 대상 : 당사와 거래하는 쏘 중소기업 제조위탁 업체
2. 하도급법 등 위반 사항 : 이상 없음

■ 세부 내역

□ 사전 심의

1. 가격 결정 : 총 ##건

업체명	심의 현황	심의 결과
-	단가결정 품의 0건, 가격결정 과정의 공정성 여부	

2. 협력업체 등록 및 취소 : ##건

구분	업체명	심의 내용	심의 결과
신규등록	-	신규등록 기준/절차 준수 및 공정성	
등록취소	-	등록취소 기준/절차 준수 및 공정성	

3. 하도급법 관련 사전 심의

심의 내용	심의 결과
서면 계약서 발급 의무 준수 여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위반 여부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 여부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금지 위반 여부	
부당한 특약 조건 설정 금지 위반 여부	

4. 추가 협의 안건 : ##건

협의(주체)	내용	협의 결과
내부/외부 등		

□ 사후 심의

1. 하도급법 등 위반 사항

심의 내용	심의 결과
지급 기한 내 대금지급 완료 여부	
하자보수 책임의 부당 전가 여부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발생 여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행위 발생 여부 등	
발급 서면 보존 및 관리사항 등	

□ 회의 사진



상기 사항이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위원회 참석자

위원장	○○○	○○ (서명)
위 원	○○○	○○ (서명)
위 원	○○○	○○ (서명)
위 원	○○○	○○ (서명)

위원회 심의 항목別 운영 가이드

	운영 가이드	비고 (근거)	
협 력 사 등 록 심 의	선정일로부터 15日 이내 결과를 선정 업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으로 개별 통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협력업체 선정 (등록)실천사항]	
	탈락 업체에게는 20日 이내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 이의신청업체에 재심의 후 결과 통보		
협 력 사 등 록 취 소	등록 취소된 업체에는 사유를 기재 통보하고, 업체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日 이내의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의신청업체에 재심의 후 결과 통보		
가 격 결 정 심 의	- 구매단가 결정時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준수		하도급法 제4조 等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금지]
	의무 사항	금지 사항	
	1. 합리적, 현실적 기준 반영	1. 정당한 사유 없는 일률적 인하	
	2. 반드시 단가 합의서 첨부	2. 협력사에 인하 목표 일방적 할당	
	3. 사양 변경, 설계 변경분 반영	3. 내부 경영목표 미달 사유로 인하	
	4. 공급원가변동분 단가 반영	4. 단가인하時 既발주분 소급적용	
	5. 운송조건변경時 물류비 반영 等	5. 당사에 유리한 환율, 결제 화폐 적용	
	6. 객관적 근거 없는 인하 (협력사 영업이익 기준 等)		
	7. 물량 약속 불이행 또는 非거래 업체의 비정상 견적 이용 인하 等		
기 타 사 항	- 부당한 특약 조건이 없는지 확인한다. -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특정업체 물품 등을 사용 지정 불가하도록 하는 등의 부당한 경영 간섭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 기타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한다.		하도급法 제3조의4, 제12조의3, 제18조 等

내부심의위원회 운영 조직도

하도급 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사전 심의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위반 행위의 예방을 위해서 내부심의위원회 조직을 구성·운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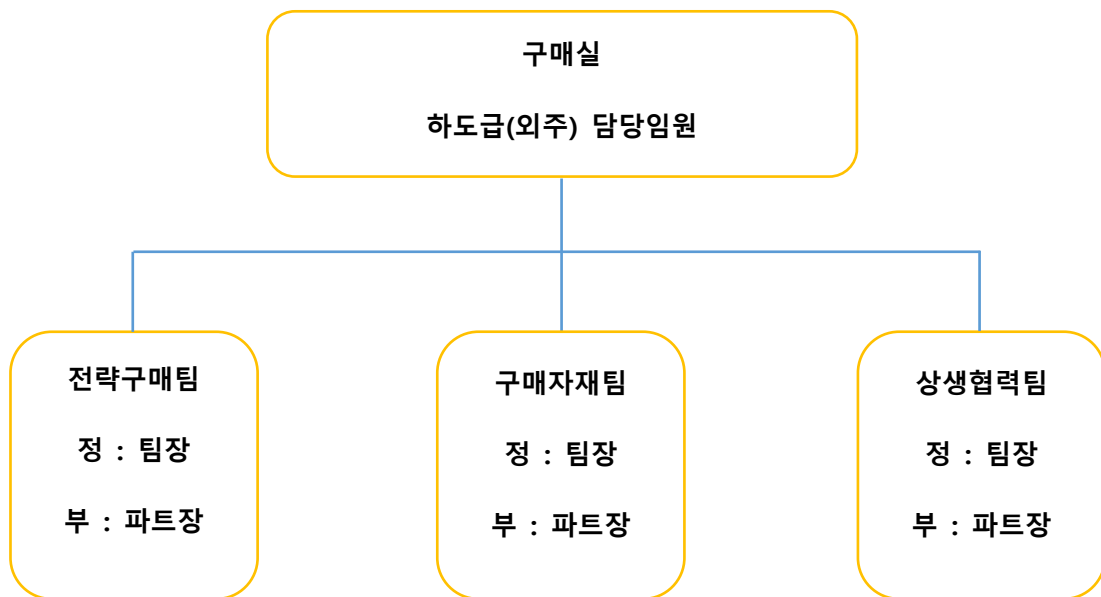
□ **위원 구성** : 하도급(외주) 담당임원포함 3인 이상

※ 위원은 매년 1회 조직 변경 등 반영하여 운영하고 년 중 조직의 변경 사유가 발생 시
하도급(외주) 담당임원이 수시 변경 가능함

□ **운영 기간** : 2021. 11. 01 ~ 별도 종료일 발생시까지

※ 조직의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는 1년 단위 자동 연장됨

□ **운영 조직도**



※ 해당 그룹(또는 파트)의 임원은 결재 권한을 위원에게 위임 가능